

#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(안 제1조)

나.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 (안 제3조)
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(주최)하는 체육행사에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
- 군계획에 따라 이장, 새마을지도자,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단체에서 교육,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, 다만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.

-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 지원 등

다. 평창군 공용차량 차량지원 사용자의 의무 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 2015. 10. 20 ~ 2015. 11. 9) : 제출의견 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(반영완료)

- 안 조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“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 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삭제검토 요망

(3) 사전규제심사 : 삭제검토 (반영완료)

- 제7조제1항 “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.”는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(행정규제의 범위 등) 제1항 제4호 행정규제에 해당하여 삭제검토 요망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##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용차량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.
2. “업무담당부서”란 군 본청의 실과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사무소를 말한다.
3. “차량관리부서”란 공용차량 지원 및 배차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.
4. “이용자”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범위)**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,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
2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(주최)하는 문화, 예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
3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(주최)하는 체육행사에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

4.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, 새마을지도자,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)에서 교육·세미나·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
5.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,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
7. 자매결연지와 농·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

**제4조(차량지원 신청)**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2. 사용일시
3. 행선지 및 경유지
4.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
5.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(구체적 기재)

**제5조(검토)**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원결정)**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,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이용자 등의 의무)** ① 공용차량 이용자(탑승자)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

2. 차내에서 음주, 흡연,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

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호서식]

**공용차량 지원신청서(제4조 관련)**

신청인	기관·단체명		대표자	
	사무실 주소		연락처	
행사내용	행사명			
	사용목적 및 주요내용	구체적으로 기재		
	행사주관			
	행사기간			
	사용기간			
	행선지 및 경유지			
	탑승인원	명		
<p>평창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「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 . . .</p> <p>기관·단체명 :</p> <p>주 소 :</p> <p>대 표 자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<b>평창군수 귀하</b></p>				
첨부서류				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재무과장 정성문
연락처	(033) 330-2270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【지방자치법】

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